

제 1985 호
1987. 4. 25

제	1985	호	1987. 4. 25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출판처: 서울특별시청 일보
출판인: 서울특별시청 일보
전화: 731-6111~5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731-2337

시보

차 례

◎ 공문서형	
조직관리지침시달	3
물관관리권원소호조치	9
◎ 규 칙	
제 2168 호: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규정	12
◎ 고 지	
제 264 호: 사도청문증류사형법정	13
제 265 호: 사도청문증류사형법정	14

(여면계속)

공									
화									

1. 시 공문서형 반드시 정해야 한다.
2. 시도는 공문서형서적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1

◎ 구 고 시

도봉구제 139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변경시행허가	15
---	----

◎ 공 고

제 248 호 :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만소공식승달	16
제 252 호 : 제 2 종건기공사업제행정처분	17
제 255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	17
제 262 호 : 제 2 종건기공사업면허취소	19
제 263 호 : 제 2 종건기공사업면허취소	19

◎ 사 련

◎ 정 정

공 문 시 행

서 울 특 별 시

사경 01210-101

(418)

1987. 4. 23.

수 신 : 수집처참조

제 목 : 조직관리 지침서달

1. 총구체 조기 01210-98('87.3.31) 호와 관련임.
2. 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첨과 같이 조직관리 지침을 시달하니 각급 기관장은 기구 및 정원관리에 철저히 기할 것임.
3. 편정장비 및 시설증가등에 의해 꼭 필요한 경우에 기구나 정원조정을 의뢰할 때에는 장기 수급 전망을 정확히 파악하여 편편서류 첨부요청할 것.

첨 부 : 조직관리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기획관리실장 전전

수신처 : 사과 01-79, 서구 01-17, 서사 01-59, 서보 01-17.

조 직 관 리 지 혁

1. 목 지

간소하고 능률적인 조직관리체계 확립

- 2000년대 국가발전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 고도 정보산업 사회의 행정 환경변화와 시민소득 향상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우리시 실정에 적합한 기구 및 인력 편리로 조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80년대말 행정수요)

- 전반적인 도시행정의 변화
 - 행정수요의 다양화: 고급화, 전문화 요구
 - 도시구조의 변화: 생활권별 다핵 도시화
 - 시민참여 행정필요: 행정확언 및 주민과의 대화로 민의수렴
- 고도정보산업의 발달
 - 컴퓨터, 메이타 통신등 전자정보산업의 발달
 - 개인의 노동시간 축소 및 여가시간 확대
- 소득향상에 따른 시민의 행정수요 다양화
 - 의식, 주의 고급화(교통, 주택, 식품 등)
 - 쾌적한 도시환경 요구점중(공해, 수질오염방지, 위락시설 등)
 - 사회적 소외계층 보호필요(저소득층, 신계 및 심신장애자, 노인등)
 - 사회복지시설 확충(청소빈민회관, 신설 등)
 - '88 서울올림픽 준비만전
 - 올림픽경기시설 점검 및 도시환경 정비
 - 시민의식 수준 및 문화수준 향상
 -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시 실정에 적합한 기구 및 인력관리

2. 현 황

(기 구)

'87.3.31 현재

기 관 별	기 구
본 청	1 실, 1 단, 2 과, 11 국, 1 본부, 9 담당관, 79 파, 277 계 (경찰국: 1 국, 4 담당관, 12 파, 47 계 포함)
구 청	17 구, 17 실, 85 국, 340 파, 1,060 계, 17 보전소 (구별군: 1 실, 5 국, 20 파, 62 계, 1 보전소)
동	453 개동
사 업 소	59 개소
소 방 관 서	12 개서 (70 파출소)
경 찰 서	24 개서 (561 파출소)

(정 원)		87. 3.31 현재			
기 관 명	계	일반직	기능, 교육, 연구	소 방 직	공 안 직
계	49,948	20,855	9,084	2,507	17,492
본 청	1,921	1,469	452		
구 청	10,116	7,261	2,855		
동	9,695	8,789	906		
사 업 소	7,375	3,235	4,090		
소 방 관 서	2,674		167	2,507	
경 찰 국	18,167	51	624		17,492

3. 기본방향 ○ 감소한 행정조직의 운영 • 기구설치 및 인력증원의 지속적 억제로 대국 대과제 구현 • 행정사무의 과학화로 능률성 정도모로 인력 절감 - 행정절차의 간소화, 사무자동화, 시지의 규격화 • 민간위탁 사무확대 -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비권력적인 업무 ○ 기구 및 인력활용의 극대화 • 현행기구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 - 유사기능 통합합, 상제조정, 기능작업반 편성 • 올림피아드 및 복거행정 구현을 위한 기능 보강 - 올림피아 도시환경 정비, 문화예술 향상 기구 - 올림피아 준비를 위한 한시조직계 활용 • 공무원의 소수 정예화, 전문화 - 인력의 질적적소 배치 및 정	원의 직정배분 ○ 일선행정 기관 강화 • 현지성, 봉사성 집행사무-구·동·읍·위임 • 구·동행정 기능보강-지역개발, 시민복지 증진, 시민참여의 기초적 단계 (반상회동) ○ 행정전문인력 지속적인 위임, 위탁추진 • 책임, 위탁업무의 지속적 발굴과 근본적인 이양방안 강구 • 철저한 사무관리로 위임, 위탁의 실효성 확보 4. 세부지침 가. 기구관리 ○ 행정기능의 적정배분 • 조직계층간 기능의 합리성 유지 • 신규행정수요-도시관리, 올림피아비, 각종국제행사 등 ○ 부속기관의 신설 지양: 기존 부속기관은 기관장의 직급, 기관의 규모, 민간이양 가능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폐지, 통합하거나 민간단체화 (예)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소
---	---

건설차재시험소, 공업시험소, 병원등 ○ 사업소기능의 재검토:조직진단 실시 • 제속수행사업과 민간위탁기능 사업구분 •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적정화 • 관리기관보다는 집행기관 위주 나. 정원관리-총정원 범위내 ㄷ 인력배분의 적정화 및 인력활용의 극대화 • 공무원교육 및 훈련강화로 소수정예화 실현 • 사무의 표준화 및 자동화로 사무간소화 • 유사중복기능의 통합으로 인력절감 도모 ○ 합력적인 인력 조정 • 행정수요 변동에 따른 적정인력 조정 • 신규시선했 및 장비유지관리 인력은 우선 현정원을 재검토 후 적정인력 산출 ○ 공무원의 증원은 법령사항이나 시설장비관리요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기타 증원요인은 기관내 기존인력의 상제조정으로 대처 ○ 구·동정원 적정관리 • 구별 업무량에 의한 구 표준인력을 산출하여 신개발지역 소요인력 산정:하부조직(파발, 동별) 정원조정 적	정확 (예) 인구, 면적, 해안, 시세, 수질수, 민원처리량수 등 • 국가공무원 정원 적정배치 - 국가업무량 권한 위임받아 처리하는 부서에 정원배정 -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나 현원의 이동에 따른 국가공무원 정원조정 금지 (예) 지방세 및 수도요금과징부사등 • 기술직공무원 정원관리 철저 - 복합민원처리처치권 준수 및 일반행정부서에 기술직배치 금지 (예) 기획감사과, 민방위과, 새마을과에 교육직정원, 청소과에 화공직, 건축직정원 등 • 일선 동행정 강화에 따른 정원 우선 배치 ○ 고용직공무원 및 일용인부 증원 억제 • 고용직공무원 정원관리 철저 - 고용분야의 업무량 변동이 있을 경우 현정원 범위내에서 즉시 정원 조정 (예) 구민회관 및 하수처리장 시설 등 - 고용원은 반드시 고용직명에 맞는 업무를 수행 - 만약 직명과 상이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해당정원은 즉시 감축 조정 (예) 단순노무자가 사무실 일반행정 수행(감사원, 장무원, 청부 등)
---	---

- 일용인부의 고용여제
 - 계절적 요인이나 사업정책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12월 이내)에 한하여 고용
 - 사실상 상시 계속 고용이 필요한 경우는 일반적 정원확보
 - 단순업무 보조분야 일용인부 채용금지
 - 전문직 공무원관리 철저
 - 일반직인 공무원의 채용 방법으로 그 확보가 곤란한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 적용
 - 과학, 기술, 교육, 홍보, 문화, 노동, 통계 등 분야
 - 일반정규직 공무원으로 수행 가능한 분야 전문직 채용 금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의 채용기간으로 사업을 종료
 - 장기 계속 수행업무는 연구직등 정원 확보
 - 예산에 계상된 전문직 정원의 등 급별 차리기산 해당자 채용
 - 일반직 공무원의 전문화 유도로 전문직공무원의 장기 계속계약으로 인한 일반정규직 공무원화 지양
- 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업무 또는 증폭되는 업무의 조정
- 소원의 불분명 또는 증폭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주원부서 지정요청에 따라 수사 주원부서 지정

- 문명 (요청부서 : 시청개발담당관)
- 라. 행정편환의 위임, 위탁
- 권한 위임의 확대 및 내실화
 - 단순 결유 및 경수권만 위임 → 결정권까지 완전 위임
 - 권한위임과 동시에 인력, 예산 조치
 - 수입기권의 사전 교육강화
 - 권한위임 관제집규 정비
 - 위임사무의 지속적 검토, 발굴
 - 내부위원의 실질적인 확대
 - 위임처리가 곤란한 사무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
 - 담당업무의 명확화
 - 형식적인 내부위원 배제
 - 민간위탁 가능업무의 적극 발굴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업무
 - 국민생활과 직결된 반복적이고 단순한 집행업무 (예) 검사, 검정, 조사, 교육, 등록, 청소, 지도 등
 - 민간위탁을 통하여 업무량 감축을 정부부담 경감 및 민간 부문에 의한 자율적 규제가 바람직한 업무
- 마. 위원회의 관리
- 위원회의 설치
 - 행정수요의 다양화에 따른 전문인의 의견 수렴 필요
 - 위원회의 정비
 -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하고 실질적인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 바. 조직진단 실시 조직과 인력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부서별, 분야별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체인력 활용의 합리화		방안을 강구 5. 정정사항 - 기구 및 정원조정안의 제출 - 기구 및 정원을 조정요자 할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요구기관장이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협의기관이 있을 경우 협의기관장의 검토의견서 첨부)	
요 구 기 관	최 종 결 재	협 의 기 관	비 고
본청, 경찰국, 소방본부	주 관 국 장 경 찰 국 장 소 방 본 부 장		- 총괄 - 경찰국 경무과장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사 업 소	소 장	주 관 국 장	
구 청	구 청 장		
보 건 소	소 장	보건사회국장	
- 본청, 경찰국, 소방본부, 사업소의 기구조정(안)은 시장의 방침을 득할 것. - 조정요구서 작성시 검토사항 - 조직의 목적 - 타조직과의 기능중복 여부 - 조직의 존속기간 - 장래의 전망 1인당 업무량 산출 - 기존 인력활용 여부 - 예산확보 가능성 - 제출기일 - 정기조정: 년 2회(상반기, 하반기) - 수시조정은 가급적 지양 - 상반기: 전년도 9.30까지		(익년도예산 반영) - 하반기: 당해년도 3.31까지(당해년도예산 반영) - 단, '87기구 및 정원조정안은 '87.5.5까지 제출 - 첨부서류 - 발침서 사본 - 조정안 - 기구개원 또는 정원조정 사유서 - 업무처리 과정표 - 당해업무 실적 또는 계획 1인당 업무량 산출표 - 년간 소요예산 및 내역 - 관계법령일 증빙자료 - 타부처 및 외국사례 등 참고자료	

시 물 품 별 시

세정01750-146

731-6256

87.4.23

수일 : 반은꽃등로

제목 : 물품관리전환 소요조회

1. 우리파에서 소유하고 있는 아래물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처를 조사코자하니 소요부서에서는 '87.5.15 까지 사용신청하기 바라며 기한만 관리전환 요청이 없을지는 해당없는 것으로 감주하겠음.

가. 소요조회대상물품

물품분류번호	품명	구적	단위	수량	상부가격	취득년월일	상대	회계과	물품소재지	사용용도
3610-237	견자미타 A2 배사기 day	A2	대	1	3,430,000	83.2.14	중고	일반	세정과	장척도복사용

끝

시 물 품 별 시 장

재무국장전결

받은곳 : 서파 1-67, 서구 1-17, 서소 1-10, 서사 1-57, 서보 1-17

뜻모아 하나로, 협모아 세제로

“관인 생략”

서 울 록 별 시

주거 30411-469

731-6388

87. 4. 23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물품관리 전환 소요 조의

1. 우리 파에 보유하고 있는 다음 물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61 조의 3 외거 관리 전환 소요여부를 조의하니 87.5.10 일까지 관리전환 요청하기 바라며,

2. 위 기일내 관리 전환 요청이 없을시는 소요가 없는 것으로 처리 하겠음.

가. 물품 관리 전환 명세서

정부물품 관리번호	품 명	규 격	취득년월일	장부가격	상 태	회계명	물 품 사 유
3610-237	전 자 복사기	B. DESK DT-120C 실도리코	78.12.8 시민과 에서 관리전환	2,006	사용가능	특별회계	정수의 보 유

끝

서 울 록 별 시 장

주택기뢰과장 전결

수신처: 석파 1-79, 석구 1-17, 석보 1-17, 석사 1-59

총 합 건 설 본 부

종전종 01760-1260

(362-3232 교환 353)

1987. 4.23.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불복판리전환 소요조치

1. 우리 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래 불품에 대하여 판리전환 소요를 조치하오니 희망부서에서는 '87.5.4 까지 판리전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특히 금번 불품은 한강개발사업에 따른 판리전환 품목으로서 위 기일까지 요청이 없으시는 소요가 없는것으로 간주 처리할 것임.

가. 판리전환 소요조치 내역

회계명: 일반회계

연번	품목 번호	품 명	규 격	수량	장부가액 (단위당)	취득 시기	상태	보관부서	비 고
1		영문전동파자	15 인치	1	381,249	'83	사용가	경 리 과	364-4533
2		미놀타카메라	망원렌즈부착	1	500,000	'83	"	한강개발부	313-3034
3		책 상	철 제	10	10,000	"	"	"	"
4		외 자	4 종	6	10,000	"	"	"	"
5		집 자 시 제	췌즈벽걸이	1	25,000	"	"	"	"
6		무 전 기	2 W	3	700,000	"	요청비	"	"
7		"	2 W	26	500,000	"	"	"	"
8		타임스탬프	마르젠 820	14	14,000	"	"	"	"
9		팩코일유니트	KHIC 92 X 23X 60cm	4	124,000	"	요청비	"	"
10		"	KHIC 114X 23 X 60cm	38	121,000	"	"	"	"
11		물 링 타 워	50 R/T	1	1,207,000	"	"	"	"
12		냉 동 기	Model No 4RR2	1	900,000	"	"	"	"
13		온수보일러	300,000 KAL HR 약4SD-400	1	3,015,000	"	"	"	"
14		한일자동명프	1,500 L	1	42,000	"	"	"	"
15		변 전 기	구형TR150KVA MOE 34 4 W	1	8,108,000	"	사용가	"	"

총 합 건 설 본 부 장

글.

수신처 식판 1-84, 서구 1-17, 서보 1-17, 사사 1-56

규 칙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7 년 4 월 23 일

서울특별시장 엄보현 인

○서울특별시 규칙 제 2168 호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서울특별시 보건의료국장, 산업경제국장과 전설관리국장
2. 법제 5조제 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자 3인

제 3 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그의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미리 지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조 (직권) ①위원회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장은 법무담당관이 되고, 간사는 법제담당 지방행정사무관이 된다.

제 5 조 (위원회의 회부) 서울특별시장은 처분청으로부터 행정심판청구서가 송부되면 지체없이 별거사식에 의한 심리의결요구서에 행정심판청구서, 처분청의 답변서, 심판청구이유와 답변내용의 대비표, 사건정위를 기재한 서류 기타 관계 입증자료와 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심판청구사건과 관계있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구술심리를 하는 때에는 비청구인인 행정청의 5급이상의 공무원이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 7 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8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규칙의 제정) 서울특별시 소원심의회의규칙은 이를 제정한다.

(별지서식)

행정심판심리의절 요구서

수신 : 행정심판위원회의위원장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청구가 있어 이에 대한 심의, 의결을 요구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장

1. 행정심판청구인주소

성명 (명칭)

직업

연령

2. 행정심판청구접수년월일

3. 행정심판에 관제된처분

4. 행정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취지

나. 이유

5. 기타 참고사항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264 호

사료성분등록사한변경

사료관리법 제 22조제 3 호의 규정의 의거 사료성분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내용을 별첨과 같이 고시한다.

1987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장

1. 사료성분등록

등록 번호	공정 명	소재지	대표자	사료의 종류	사료의 명칭 또는 용도	성분 함량 (%)						비 고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화분	잔 수	인	
4-63	농업 사료 공업 (주)	성수동 2가 323	정태원	양돈용 배합사료 (일건 기산중)	임신돈사 료 (일건 기산중)	이상 12.5	이상 2.5	이하 10.0	이하 10.0	이상 0.5	이상 0.4	
4-64				육우 배합사료 (이유기~성 체중200kg)	육성비육 사료 (이 유기~성 체중200kg)	14.5	2.5	8.0	10.0	0.6	0.2	

◎서울특별시 고시 제 265 호

사료 성분 등록 사항 변경

사료관리법 제 22조 제 3 호의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내용을 별첨과 같이 고시한다.

1987. 4. 23

서울특별시 장

1. 사료성분등록

등록 번호	공장 명	소재지	대표자	사료의 종 류	사 료 의 명 칭 용 도	성 분 량 (%)						비 고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칼슘	인	
4-143	건국 배합 사료 공업 (주)	자양동 227- 315	전년규	양축용 배사 료	육성비육 (이유사 ~생체중 220kg)	이상 14.5	이상 2.5	이하 10.0	이하 10.0	이상 0.5	이상 0.3	
4-144					깃난태지 (4주 이하)	21.0	2.5	5.5	8.0	0.6	0.4	

2. 사료성분등록 변경사항

등록 번호	공장 명	소재지	대표자	변경전 성분량(%)						변경후 성분량(%)						비 고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칼슘	인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칼슘	인	
4-134	건 국 배 합 사 료 공 업 (주)	자양동 227- 315	전년규	이상 13.0	이상 2.5	이하 10.5	이하 10.5	0.7	0.6	이상 13.0	이상 2.5	이하 10.0	이하 10.0	0.7	0.6	
4-136				"	"	"	"	"	"	"	"	"	"	"	"	
4-137				17.5	3.0	10.0	10.0	0.7	0.6	17.5	2.5	10.0	10.0	0.7	0.6	
4-138				"	"	"	"	"	"	"	"	"	"	"	"	
4-139				15.5	3.0	9.5	10.0	0.7	0.6	15.5	2.5	9.0	9.0	0.7	0.6	
4-140				"	"	"	"	"	"	"	"	"	"	"	"	
4-141				17.5	3.0	9.5	10.0	0.7	0.6	17.5	2.5	9.0	9.0	0.7	0.6	
4-142				"	"	"	"	"	"	"	"	"	"	"	"	
4-143				19.5	3.0	10.0	10.0	0.7	0.6	19.5	2.5	10.0	10.0	0.7	0.6	
4-144				16.0	3.0	10.0	10.0	0.7	0.6	16.0	2.5	10.0	10.0	0.7	0.6	
4-145				"	"	"	"	"	"	"	"	"	"	"	"	
4-146				18.0	3.0	10.0	10.0	0.7	0.6	18.0	2.5	10.0	10.0	0.7	0.6	
4-147				"	"	"	"	"	"	"	"	"	"	"	"	
4-148				21.0	3.0	10.0	10.0	0.7	0.6	21.0	2.5	10.0	10.0	0.7	0.6	

구 고 시

◎도봉구고시제 139 호

도시계획사업(시장)변경사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80 호(85.2.7)로 시행허가된 도봉구 창동 581-28 소위 도시계획사업(시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와 서울특별시 조례 제 2126 호(86.12.18) 행정원한 위일에 의거 변경 시행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2. 원제도서는 도봉구청 산업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7. 4. 23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소재지: 도봉구 창동 581-28

나.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사업(시장)

별칭: ㈜삼익쇼핑 3층일부 용도변경(약대 변경내용 참조)

다. 사업외규모: 대지면적: 3,347.8㎡

건축면적: 1,576.4㎡

연 면 적: 7,973.965㎡(지하 1층, 지상 4층)

라. 사업시행자: ㈜삼익쇼핑 대표이사 김흥원

마.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면 적	용 도	면 적	용 도	
3층 용도변경	1,576.4㎡	판매장	196㎡	관람집회시설 (소극장)	지상 1, 2, 4층은 변 경사항 없음.
			1,380.4㎡	판매장	

바. 사업시행기간: 87.4.20~87.5.10

사. 공사설계도서: 별 첨(생략)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248 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공시송달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비 고
84-308	진성기술종합건설(주)	권 운 상	동작구 상도동 29-13	
서류의 명칭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처리 문지			
서류의 내용	○ 주택건설촉진법 제 7 조 제 8 호 및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및 지정업무 처리 규정 제 12 조 제 1 항 제 1 호에 의한 사업자 등록말소 대상인 귀하께 동 처리 규정 제 21 조에 의거 '87.4.9 11:00 에 청문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청문에 불응하여 ○ '87.4.11 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 7 조 제 2 호에 의거 등록말소 처리 하였음. ○ 외문사항이 있을시 동작구청 주택과에 문의 바람.			
위의 서류(내용)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나 영업소재지 무단이전 및 대표자 주소지에 동거우전 2 회 산송되어 불가능 하였으므로, 이에 공시 송달 공고함. (공시송달기간: 1987.4.23 부터 1987.5.4 까지) 1987. 4. 23 서울특별시강				

나.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 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 조서: 별첨 토지(건물)조서 라. 위치도 및 계획경면도: 생략 마.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 공람장소: 도봉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토목과에 문의 바람.
---	---

토 지 조 서

공작명: 상계동 138-140 간 도로개설공사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상계동 138-168	도	1,289	수유동 279-53	민 군 식	
• 85-12	전	43	중구남산동 2가 37-2	윤 형 식	
• 140-3	잡	1,666	"	"	
• 85-101	대	32	상계동 85-11	강봉석외 2인	

물 건 조 서

공사명: 상계동 138-140 간 도로개설공사

지 번	물건의 종류	구 조	도상면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상계동 85-11	건 물	연 와 조	25	중계동 137	김 철 현
	담 장	새 명 와 증	1 식		
	대 문		1 식		

◎서울특별시공고제 262 호 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취소 전기공사업법 제 31 조제 1 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소하였기 동법 제 42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87. 4. 23 서 울 특 별 시 장	
면허번호	업 계 명	대표자	소재지	취소일자	사 유
제 1057 호	아전종합전기	송금섭	영등포구신길 4동 214-10	87. 4	전기공사업법 제 7 조 면허기준 미달
◎서울특별시공고제 263 호 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실효 전기공사업법 제 30 조 5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기공사업 면허를 실효처분 하였기 동법 제 42 조 규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87. 4. 23 서 울 특 별 시 장	
면허번호	업 계 명	소재지	대표자	취분내용	사 유
제 2 종 전기 공사업제 735 호	신한기공사	구로구개동동 170-33	윤 용	면허실효 처 분	전기공사업법제 30 조 5항 (공사업폐지)
사 령 ◎ 1987 년 4 월 13 일 명 제 110 호 용산구 행정주사보 김 계 순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용산구 지방행정주사보 최 회 정 행정주사보에 임함 용산구 지방행정주사보 이 상 필 행정주사보에 임함			마포구 지방행정주사보 백 윤 환 행정주사보에 임함 마포구 행정주사보 이 순 구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강서구 지방행정주사보 김 종 우 행정주사보에 임함 강서구 지방행정주사보 박 종 순 행정주사보에 임함		

강서구 행정주사로 지방행정주사로에 임함	우 정 옥	중구청 근무를 명함 지방환경기사보시보 (1호봉)에 신규 임용함	관 선 조
은평구 행정서기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신 태 빈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원시보 (1호봉)에 신규임용함	박 난 규
은평구 지방행정서기 행정서기에 임함	이 윤 수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원시보 (1호봉)에 신규임용함	이 현 옥
강서구 지방행정서기 행정서기에 임함	김 성 알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원시보 (1호봉)에 신규임용함	최 명 숙
강서구 지방행정서기 행정서기에 임함	방 광 근	구트구브진소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원시보 (1호봉)에 신규임용함	김 영 옥
강서구 행정서기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송 동 환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원시보 (1호봉)에 신규임용함	사 공 화
강서구 행정서기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최 락 영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원시보 (1호봉)에 신규임용함	김 제 숙
© 1987년 4월 20일자 판악구 근무를 명함 지방환경기사보시보 (2호봉)에 신규임용함	명 제 111호 정 창 영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원 (4호봉)에 신규임용함	전 매 희

충무형전 근무를 병합 자발간호원시보(1호봉)에 신규임용함 서 동 숙	최 승 숙 ② 1987년 4월 16일 명제 114호 운영과 화성방요원 지방병정적 6급상당 조 실 호 원제 의하여 그직을 면함
장남구보전소 근무를 병합 자발간호원시보(1호봉)에 신규임용함 김 용 훈	정도수원지사무소 지방화공기원보 오 봉 국 안전직합시 전술을 병합 서울특별시 경찰
② 1987년 4월 15일자 명제 112호 충합운동장관리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박 현 호 강서구 근무를 병합 충합운동장관리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김 용 훈 관악구 근무를 병합	② 1987년 4월 13일 명제 116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 윤 경 기 지방행정사무관직 임한 전자재산소 전산1계장직 포함 내 통 령
② 1987년 4월 14일 명제 113호 합강관리사업소 지방전속가사보 최 성 태 울림직전속담당관 파견(87.4.14-87. 12.31), 근무를 병합 성북구 지방전속가사보 이 인 형 울림직전속담당관 파견(87.4.14-87. 12.31), 근무를 병합	② 1987년 4월 17일 명제 117호 도봉구 건설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시보 류 석 양 도봉구 지방행정사무관에 급함 새중문화회관 사무제장 지방행정사무관시보 김 재 정 새중문화회관 지방행정사무관에 급함
도봉구 지방전속지원 김 명 수 울림직전속담당관 파견(87.4.14-87. 12.31), 근무를 병합	② 1987년 4월 20일 명제 118호 용산구 지방지적지원 장 박 현 지적지원에 임함

마포구 지적기원 지방지적기원에 입합	홍 상 국	마포구 지방농림기원보 농림기원보에 입합	함 석 주
강서구 지적기원 지방지적기원보에 입합	고 만 기	관악구 지방농림기원보 농림기원보에 입합	황 상 권
강서구 지적기원 지방지적기원보에 입합	위 정 열	관악구 지방농림기원보 농림기원보에 입합	송 동 명
강서구 지적기원 지방지적기원보에 입합	조 병 현	강남구 지방농림기원보 농림기원보에 입합	이 관 준
관악구 지방지적기원 지적기원보에 입합	손 병 윤	강동구 농림기원 지방농림기원보에 입합	강 동 열
성북구 지방지적기원보시보 지적기원보시보에 입합	박 승 열	강동구 지방농림기원 농림기원보에 입합	김 중 호
성북구 지방농림기원보 농림기원보에 입합	신 우 홍	녹지과 지방농림기원 농림기원보에 입합	신 수 용
서대문구 지방농림기원보 농림기원보에 입합	문 갈 동	연료과 지방지적기원보 지적기원보에 입합	변 중 훈

◎1987.년 4월 21일 행제 119호

집속자

지방별정적 9급상당(전공원) 신규임용합

1호봉을 급합

전과제산소 근무를 명함

학은주

지방별정적 9급상당(전공원) 신규임용합

1호봉을 급합

전과제산소 근무를 명함

행제 120호

서내문구보전소

지방약사

운전규

서울지방검찰청 파견(87.4.21-87.7.31)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보전소

지방약사

점영수

서울지방검찰청 파견(87.4.21-87.7.31)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정 정

시보 제 1354 호('87.4.11 자)의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학원 운영규

칙 개정규칙중

제 6조 3항중

“보전위생상 허가없다”를

“보전위생상 허가없다”로

제 18조 2항 3호중

“수강신청서에”를

“수강신청서에”로

제 19조의

“④기능교수용 차량은 운전교

습이 지장이 없도록 합상

정비되어야 하며, 도로운송차량

법에서 정하는 차량년한”을

“④기능교수용 차량은 운전교

습에 지장이 없도록 합상 정

비되어야 하며, 도로운송차량법

에서 정하는 차량년한”으로

자동차학원행정처본기준(별표 4)

7번의 적용 범주

“운영규칙 1항 5조”를

“운영규칙 5조”로

(별표 4 비교란)의

“1년간을 상정한다”를

“1년간을 상정한다”로

시보 제 1354 호('87.4.11 자)의

서울특별시 운전면허 점수제 행

정처분규칙개정규칙중

제 3조중

“운전면허를 발급”을

